Media/Entertainment Industry

지상파 방송시장에 부는 훈풍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검토는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

유통/미디어
민영상,황용주 (2122-9193)
mys@hi-ib.com

■ 방통위가 방송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안 중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 제시

방통위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8/4일). 방통위는 7대 정책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 중 방송서비스 활성화 정책에서 지상파 방송과 관련하여 1) 광고총량제 도입, 2) 중간광고 방안 검토, 3) 다채널서비스와 UHD 생태계 조성 추진 등을 핵심 정책방안으로 제시. .

■ 핵심 방송서비스 활성화 정책은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신규서비스의 적극 추진

금번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 중 방송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안과 관련하여 방송산업적 측면(제도개선 및 산업기반 구축)에서 주목할만한 핵심 내용은 다음 4가지로 판단.

1)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 광고유형별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에 대해서 광고총량제(광고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광고 송출시간을 정하는 것) 도입하고 광고매체간 영향력 감안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차별적인 대안 마련.

2) **지상파 중간광고 방안 검토** :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광고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청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위원회 건의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시청자 의견 수렴).

3)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추진** : 주류/의료 광고는 개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의료법 등)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금지품목 완화 추진

4) **지상파 다채널방송 서비스와 UHD 생태계 조성 추진** : 지상파 다채널서비스는 공익적 콘텐츠 중심의 무료방송(EBS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 UHD방송 활성화는 700MHz 주파수 활용 검토 및 UHD 콘텐츠 확보에 주력

■ SBS, SBS미디어홀딩스 등 지상파의 주가모멘텀 회복에 긍정적 요인

국내 광고시장에서 지상파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는 1) 내수경기 부진 지속과 2) TV매체 영향력 약화 속에 3) 인터넷, 유료방송, 모바일 등 뉴미디어 매체의 지상파 광고잠식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 이에 지상파는 판권수익 확대 및 재전송료 수취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송광고 판매에 의존하는 수익구조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

따라서 지상파사업자(SBS, SBS미디어홀딩스 등)에게 금번 방통위의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방안 검토는 주가측면에서 투자심리 회복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물론 아직까지 제도개선의 실제 도입과 방송사의 직접적 펀드멘털 개선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궁극적으로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도입이 지상파에게는 1) 광고단가 상승과 2) 광고판매 효율성 증가를 수반하는 긍정적 펀드멘털 개선 요인임은 분명한 사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정책적 수혜 기대감에 의한 주가모멘텀 회복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we say high
하이투자증권

동 자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의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 중 제2장 조사 분석자료의 작성과공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림 1〉 광고총량제에 대한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 건의안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그림 2〉 국내 매체별 광고시장 점유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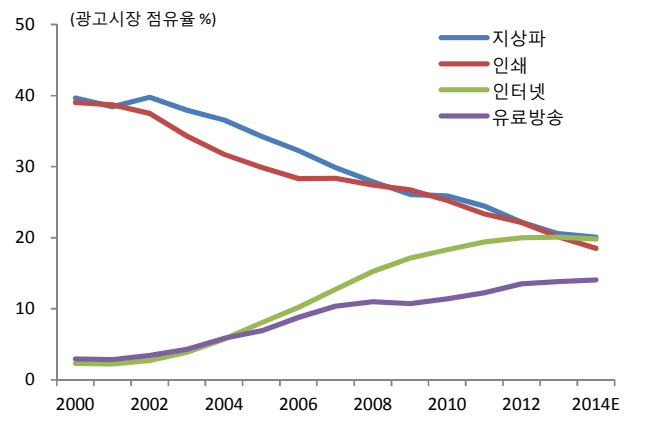

자료 : 광고연감, 제일기획, 예상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그림 3〉 지상파/인쇄 광고가 유료방송/온라인 광고로 대체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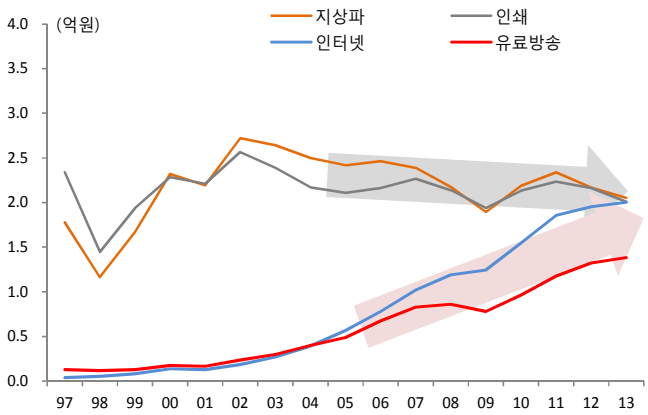

자료 : 광고연감, 제일기획,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그림 4〉 지상파(SBS)와 유료방송(CJ E&M)의 광고판매 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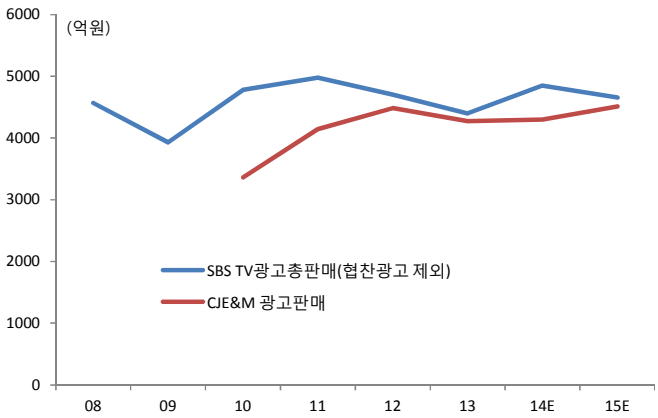

자료 : SBS, CJ E&M, 예상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그림 5〉 현행 방송광고 금지 품목

금지품목	근거법령	대상매체
주 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방송
조제분유, 조제우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신문, 방송, 잡지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 제4항	방송
전문 의약품	의약품 등 안전 규칙 제78조 제1항~제2항	신문, 방송, 잡지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그림 6〉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추진과 UHD 방송 생태계 조성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미스리 메신저를 통해 2014년 7월 2일 오전 10시 5분에 사전 배포된 사실이 있습니다.▶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민영상/황용주)